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24호
----------	--------

제출년월일 2025. 5.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공원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관광객 이용률 저조 및 대명항 일대 관광 활성화 필요에 따라 김포함상공원 입장료를 전면 무료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입장료 징수 관련 용어 정의 삭제(안 제2조)
- 나. 입장료 규정 및 감면·반환 규정 삭제(안 제5조 ~ 제7조)
- 다. 조례에 따른 입장료 징수 의무 규정 삭제(안 제11조)
- 라. 그 밖의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4. 23. ~ 5. 13.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나) 경 기 도 : 관광산업과

김포 합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 합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위치)” 를 “(명칭 및 위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한다)의 위치는” 을 “한다)은” 으로, “일원으로 한다” 를 “일원에 위치하고, 공원시설 및 함정 내·외부 시설과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을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촬영,” 을 “촬영 또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9조 중 “망실” 을 “분실” 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관광진흥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관광진흥과장 박준
	팀장 직위·성명	관광진흥팀장 허효정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 김연정(☎5105)

는 사람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는 매표소에
서 판매하는 입장권에 따라 징수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장권은 당일만
이용이 가능하다.

제6조(입장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노인 및 6세 미만인
영유아

2.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
우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가족

6.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
른 다자녀가정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0. 그 밖에 공무수행, 관광지 홍보, 축제, 행사, 촬영 등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12.31.,2022. 9.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함상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

<삭 제>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함상공원 입장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함상공원의 관람이 불가능 할 때

제8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시물의 복제를 위한 촬영,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지시에 불응한 사람
3. (생략)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함상공원 내 전시물 등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탁기간, 수탁자의 책임한계, 위탁조건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징수하

제8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김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

1. ----- 촬영 또는 -----
2. ----- 따른 -----
3. (현행과 같음)

제9조(변상책임) -----

--분실 -----

-----.

제10조(위탁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에 -----

-----.

제11조(관리자의 의무) <삭제>

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별표 1]

김포 함상공원 입장료(제5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어린이	1,000	700
청소년·군인	2,000	1,500
어른	3,000	2,000

※ 김포시민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들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포함상공원“이라 함은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51-1번지 일원의 공원시설 및 함정 내·외부 시설과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군적이 있는 현역 군인(전·의경 포함)을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김포함상공원(이하 “함상공원” 이라 한다)의 위치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51-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입장료)

- ① 함상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입장권은 당일만 이용이 가능하다.

제6조(입장료의 감면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노인 및 6세 미만인 영유아
 2.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0. 그 밖에 공무수행, 관광지 홍보, 축제, 행사, 촬영 등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함상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함상공원 입장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함상공원의 관람이 불가능 할 때

제8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시물의 복제를 위한 촬영,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지시에 불응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 및 관광객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함상공원 내 전시물 등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위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탁기간, 수탁자의 책임한계, 위탁조건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관람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자가 위탁조건 등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관리자가 함상공원을 사업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관리자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예산확보 등)

- ① 시장은 합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위탁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합상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수칙 준수)

- ① 합상공원을 관람하는 사람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합상공원을 관람하는 사람은 제1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5조(해군 제대군인 우선채용) 시장은 합상공원의 관리요원 채용에 있어 합상공원이 해군 합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군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합상공원의 관리운영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